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나2071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원상, 조아라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변 론 종 결 2021. 5. 18.

판 결 선 고 2021. 6. 22.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8. 선고 2019가단8665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7. 8.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30,051,9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51,97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82,749,75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749,7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017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4. 30. ‘B는 원고에게 38,772,733원과 그 중 17,446,066원에 대해서는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3,200,000원에 대해서는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 판결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4706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법정상속분 3/9), 자녀들인 D, E, B(법정상속분 각 2/9)가 있다.

다. B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7. 8.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약에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

협약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7. 9.

12. 접수 제1120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B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음,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F행정복지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 9. 12.에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7. 11.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항변을 하나, 원고가 위 일시에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2/9)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피고가 선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를 회복해야 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6,000,000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E)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인 2017. 12. 15. 피담보채무 변제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그 후인 2018. 5. 4.에는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이, 2018. 7. 16.에는 I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따라서 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2/9)의 공동담보가액에 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1. 3. 3.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389,113,000원(=토지 339,253,000원+건물 49,860,000원)인 사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존재하던 근저당채무는 253,879,119원(=주식회사 K의 채무 199,008,338원 중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주식회사 G의 채무 153,879,1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의 상속지분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은 30,051,973원[=135,233,881원(=389,113,000원 - 253,879,119원)×2/9,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그런데 위 공동담보가액은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30,051,97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금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7. 8.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30,051,9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0,051,97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이효두, 판사 박이규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L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M

대 346㎡

2. 위 지상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단층주택

99.72㎡. 끝.

